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92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1. 대한전기협회 개요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3.
3. 회부연월일 : 2025.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 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업무, 송·변·배전 기능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기계 중심단체로 평가되고 있음.

전기산업계 14개 협·단체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공공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임.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부칙 제1조부터 제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u>	제17조(<u>대한전기산업연합회</u> 의 설립 및 운영) ① ----- ----- ----- ----- <u>대한전기산업연합회</u> (이하 “ <u>연합회</u> ”라 한다)를 <u>설립한다.</u>
② <u>협회</u> 는 법인으로 한다.	② <u>연합회</u> -----.
③ <u>협회</u>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u>연합회</u> ----- -----.
④ 그 밖에 <u>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u>연합회의 정관, 설립</u> -----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1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	② ----- -----

현행	개정안
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협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u>연합회</u> ----- ----- -----.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필요

현행법 제17조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8조는 현행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아직 없는 상황임.

현행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전기산업 실태조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사업 출연금·지원금 지급 업무,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련 업무 등¹⁾임.

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의 검토·확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한편, 현행법 시행²⁾ 전부터 전기산업 업계를 대변해 온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 3월 26일에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사단법인 지위에 해당함.

이에, 별도의 협회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이미 전기산업 관련 업체들이 다수 가입하여 있고 관련 업무를 오래 수행해 온 대한전기협회를 현행법에 따른 법정 협회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산업계 13개 협·단체³⁾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공공성·전문성을 감안하여 대한전기협회를 현행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법정단체의 명칭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규정하고 대한전기협회의 지위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한전기협회가 이미 정부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법정단체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현행법은 2024.1.9.에 제정되어 2025.1.10.에 시행됨

3)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전기연구원

보다는 대한전기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다만, 개정안은 본칙 규정에서 협회 설립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대한전기협회로 하여금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어 개정되는 현행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안 부칙 제2조제1항은 이처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근거로 대한전기협회가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정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법 제17조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③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를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 제17조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제17조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필요

또한, 행정청의 인가와 같이 실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부칙에만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저해될 수 있음.

따라서, 안 제17조제1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는 문구를 현행과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17년에 개정된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고, 개정안과 유사하게 한국소방안전협회가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었는데, 본칙 규정에서도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근거에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음.

소방기본법 개정규정(법률 제15300호)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를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문 의 처

02)6788-5537

참고 1

대한전기협회 개요

- ☐ 설립일자 : 1965. 3. 26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 주요연혁
 - (1965.03)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창립
 - (1977.11) 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장학회 설립
 - (1995.09) 전력기술교육원 개원('22년 이전, 서울 수색→경기 양주)
 - (2016.12) 실증연구센터 준공(충북 제천)
- ☐ 회원현황
 - 총회원수 : 487회원(법인회원 241개사, 개인회원 246명)
- ☐ 인원 및 조직
 - 임 원 : 김동철 회장(한전 사장), 노용호 상근부회장(前 국민의힘 의원),
이범익 전무이사(前 한전 경북본부장)
 - 직 원 : 총 135명(정규직 111명, 별정직 24명)
 - 조 직 : 1본부 8처 1실 25팀
- ☐ 주요사업
 - 정부 위탁사업(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유지관리
 - 전력산업기능인력 양성사업
 - 기술정책 및 조사 연구용역사업
 - 전기의 날(4.10) 기념식 및 정부포상
 - 전력정책포럼 운영
 - (재)대한전기협회 장학회 운영